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 2021. 1. 4.

개정 2021. 4. 14.

개정 2021. 7. 30.

개정 2022. 1. 3.

개정 2022. 6. 17.

개정 2023. 1.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선박"이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 등으로서 「친환경선박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친환경인증선박"이란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이하 '지원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4. "보조율"이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를 통하여 식별된 선종별 친환경선박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선박 건조가격 대비 지원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친환경선박법」 제16조2호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6. "국내조선소"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선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해당 연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공고일 이후 친환경인증선박 건조완료(최초 선박검사증서 발급일 기준) 예정인 자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5.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조(지원금 한도 및 산정) ① 지원금의 전체 지급한도는 국내 친환경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한도는 신조선가 200억 이하는 선가의 최대 30%, 200억 초과 300억 이하는 20%, 300억 초과는 10%로 하며,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별표1)'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억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성과 등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최대 보조율(30%)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친환경선박 건조 증명을 위해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건조 계약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⑧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이 건조된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조사, 점검이 있는 경우 온실가스의 실제 감축 실적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 규모, 대상 및 선정 기준
3.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신청서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3.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4.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표 2의1에 따른 기업 건설도 평가 증빙자료
6. 건조계약서 및 조선소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단, 사업 공고 전 건조계약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7.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8. 별지 제4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별지 제5호 서식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10. 별지 제6호 서식의 선가내역서(2개 이상의 조선소 비교 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11.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정계획표(조선소에서 별도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명시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공고마다 **최대 2척**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3. 그 밖에 접수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사업신청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할 면허관청 소속 공무원 및 건조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보완

사항을 안내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보완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제9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양수산부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명
2. 해운물류·조선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 2명
3. 금융기관 전문가 1명
4. 그 밖에 해운물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순위 확정(사업신청서 등 사실여부 확인 포함)
2.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
3.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지원사업 신청자 중에서 당해 연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지원금의 2배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해 연도 지원금 예산 범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동일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한 선박 중 2척 이상이 지원대상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 이 중 최우선 순위 1척만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후보 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후순위 선박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예정인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액이 남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 공고 시에는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건조작업에 착수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R&D)에 따라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이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이후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의 등급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2차 지급시점은 해당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1. 다음 가목의 신청 서류를 통해 건조작업에 착수했다는 증명 후 1개월 이내에 1차 지급(50%)하고 다음 나목의 신청 서류를 통해 건조완료했다는 증명 후 1개월 이내 2차 지급(50%)한다. 단, 1차 지급 이후 건조 과정에서 선가가 낮아지는 경우, 최종 선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재산정하여 2차 지급한다.

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 : 건조계약서의 건조착수 공정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 완료 여부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일체

나. 2차 지원금 신청 서류 :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박인도 시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일체

제14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

준수여부

2.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5조(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건조 선박 인수 전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을 선박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본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원금을 지원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완료한 선박을 7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환수하며, 환수요청을 받은 자는 한 달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 ① 수탁기관은 지원금 운용,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신청서

확인,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현황, 해체 또는 매각 현황, 선박건조 관련 현황, 지원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신청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관련 계획 등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결과
3.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 내용

부칙 <2021. 1. 4.>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4.>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3.>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17.>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신조선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한도
200억 이하	1등급	선가의 30%	50억/척
	2등급	선가의 28%	50억/척
	3등급	선가의 26%	50억/척
200억 초과 300억 이하	1등급	선가의 20%	50억/척
	2등급	선가의 18%	50억/척
	3등급	선가의 16%	50억/척
300억 초과	1등급	선가의 10%	50억/척
	2등급	선가의 8%	50억/척
	3등급	선가의 6%	50억/척

※ 다만, 당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도(척당 50억)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신조선박 친환경도 (40)	40점	☐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 (예비인증서의 등급) <table> <tr> <td>등급</td> <td>1</td> <td>2</td> <td>3</td> </tr> <tr> <td>점수</td> <td>40</td> <td>37</td> <td>34</td> </tr> </table>	등급	1	2	3	점수	40	37	34																																								
등급	1	2	3																																															
점수	40	37	34																																															
기 업 건설도 (20)	2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table> <tr> <td>구분</td> <td colspan="4">신용평가구간</td> </tr> <tr> <td>구간</td> <td>1~2</td> <td>3~4</td> <td>5~6</td> <td>7이하</td> </tr> <tr> <td>점수</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r> </table>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이하	점수	20	18	16	14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이하																																														
점수	20	18	16	14																																														
사업계획 타당성 (40)	4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table> <tr> <th rowspan="2">평가항목</th> <th colspan="5">평가점수</th> </tr> <tr> <th>우수</th> <th>적합</th> <th>보통</th> <th>미흡</th> <th>평점</th> </tr> <tr> <td>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td> <td>8</td> <td>6</td> <td>4</td> <td>2</td> <td></td> </tr> <tr> <td>자기자금 조달방안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td> <td>8</td> <td>6</td> <td>4</td> <td>2</td> <td></td> </tr> <tr> <td>선가내역서의 타당성</td> <td>8</td> <td>6</td> <td>4</td> <td>2</td> <td></td> </tr> <tr> <td>선박건조 공정계획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td> <td>8</td> <td>6</td> <td>4</td> <td>2</td> <td></td> </tr> <tr> <td>온실가스 감축 기여도</td> <td>8</td> <td>6</td> <td>4</td> <td>2</td> <td></td> </tr> <tr> <td colspan="5">합 계</td> <td></td> </tr> </table>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합 계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합 계																																																		
가점	-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자(5점)																																																
감점	-	☐ 지침 제16조(사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자(5점)																																																
총 점	100점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 건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 가점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전담기관) 결과보고서 및 신조선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건조사양서, 구매계약서 일체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 선박의 특성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추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20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KIS신용평가모형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 구간 1~2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신용평가 구간 3~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 구간 5~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 구간 7이하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 (NICE신용평가정보)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면허의 종류		이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a+b)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a)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b) (보조금 포함)	만원	만원	만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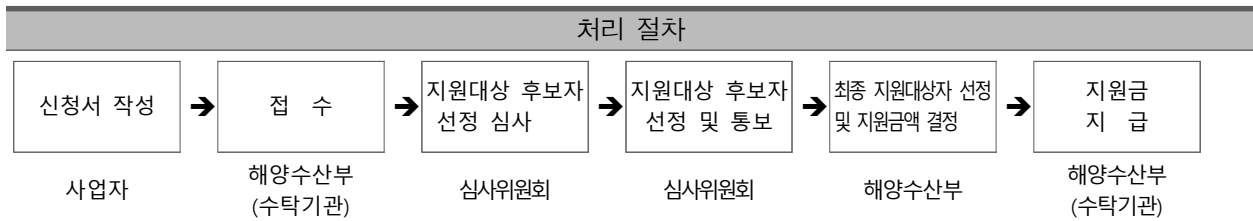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2.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별지 제3호)
-------	--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신청자 (소유자)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전자우편	
선박 주요 제원	선명		길이[m]	
	선종		너비[m]	
	선적항		깊이[m]	
	용도		승선인원	
	총톤수 (G/T)		항해구역	☐ 국제 외항 ☐ 국내 연안 ☐ 평수 구역(내수면 등)
	재화중량 (DWT)			
	추진 기관	기관 Type	[kW] Output	[PS] 대 Number of unit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추진시스템	☐ 화석연료 ☐ LNG ☐ LPG ☐ 배터리 ☐ 암모니아 ☐ 수소 ☐ 하이브리드 ☐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기타	☐ 기술의 명칭 :

4.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

조선소	상호명	
	주소	
	건조실적	
계약정보	건조가격	
	건조계약일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 종류	규 모 (GT)	건조 척수 (a)	건조 가격 (b)	총 투자액 (a×b)	타인자본	자기자본	비 고
계							

6. 자금조달방안

① 건조자금 구성 및 조달 방안

자금 종류	금 액	비율	조달방법	비 고
대출금				
보조금				
자기자본			6-② 자기자본 조달방안 참고	
계		100%	-	-

② 자기자본 조달 방안

자금구분	세부조달계획	금 액	비율	증빙자료
계			100%	-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	일 정
○ 계약 체결	
○ 강재절단	
○ 선각공사 완료	
○ 추진시스템 설치완료	
○ 진수	
○ 인도	

※ 일정은 년, 월 기재

8. 운항계획서

- 정박지, 운항구역, 운항거리(1회), 운항시간(1회), 운항속력, 일운항횟수 등

※ 구체적으로 작성

9.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계획서

- 에너지 충전시설 현황

정박지	충전에너지	구축현황	충전시설 주소지	충전시설 제조사	비고
	전기 LNG	구축중, 구축완료, 계획중			

- 현장사진(구축완료인 경우에 한함)

- 충전시설 구축계획

- 지자체와의 설비 구축 협약, 자기자본을 활용한 설비 구축 등

※ 구체적으로 작성

10.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 친환경선박 민간 보급 확산 기여에 미치는 영향 등

-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 구체적으로 작성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상 호(사업장 명칭)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선 명 (용 도)			
선박번호			
예비 인증 사항	설비구분		
	적용기술		
	규 격		
	수 량		
	제조번호		
	인증등급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예비인증을 받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수집·이용항목	▶ 필수항목 •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 세금계산서 등 지원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보유·이용기간	친환경인증선박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건조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구 분		기존선박**	신조예정선박
총톤수[TON]			
적용기술			
순항속도(at MCR 75% Power) [knots]			
추진기관	모델명		
	연속최대출력(MCR) [kW]		
	① MCR의 75% [kW]		
연료	연료 종류		
	② 연료소모량 (at MCR 75% Power) [g/kWh]		
	③ CO ₂ 환산계수*** (C _F) [t-CO ₂ /t-Fuel]		
④ 연간운항시간 [hr/year]			
⑤ = ① x ② x ③ x ④ x 10 ⁻⁶ 연간CO ₂ 배출량 [ton/year]		⑥	⑦
⑥-⑦ 연간CO ₂ 감축량 [ton/year]			
감축률((1-⑦/⑥)x100%) [%]			

* 온실가스란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에 한함

** 기존 선박이 없는 경우 기존선박은 유사규모, 선종의 사례를 비교하여 작성할 것

*** CO₂환산계수 “C_F”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값을 따를 것

※ 붙임서류 1) 기존선박의 추진기관 사양, 연간운항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선박 운항 프로파일(단, 하이브리드선박에 한함)

선가내역서

구 분		조선소 'A'		조선소 'B'		비 고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1)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노 무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설 계 비	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생 산 설 계					
	소 계					
2) 일반 관리비						
3) 기 업 이 윤						
4) 총 원 가						
5) 부가 가치세						
6) 총 선가내역						

※ 붙임서류 1)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세부 내역서

2) 조선소 견적서(선가내역서)

※ 외국회사와 계약한 해외제품(엔진, 추진시스템 등)의 금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

공정계획표(예시)

계획 공정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설계	10.0	■	■	■	■								
자재구매	20.0			■	■	■	■	■	■				
선체공사	20.0				■	■	■	■	■	■	■		
의장공사	10.0							■	■	■	■	■	
기관공사	10.0								■	■	■	■	
배관공사	5.0								■	■	■	■	
전기공사	10.0							■	■	■	■	■	
선실공사	5.0								■	■	■	■	■
도장공사	5.0										■	■	■
시운전	5.0											■	■
공정율(%)	월별 누계	1.0 1.0	1.0 2.0	6.0 8.0	7.0 15.0	8.0 23.0	8.0 31.0	9.0 40.0	14.0 54.0	13.0 67.0	11.0 78.0	11.0 89.0	11.0 100

※본 공정계획표는 예시이며 건조 예정인 선박의 실제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하거나,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면허의 종류		이메일
신청 내용	최초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사업계획
	○ 건조 일정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 사업자 변경 등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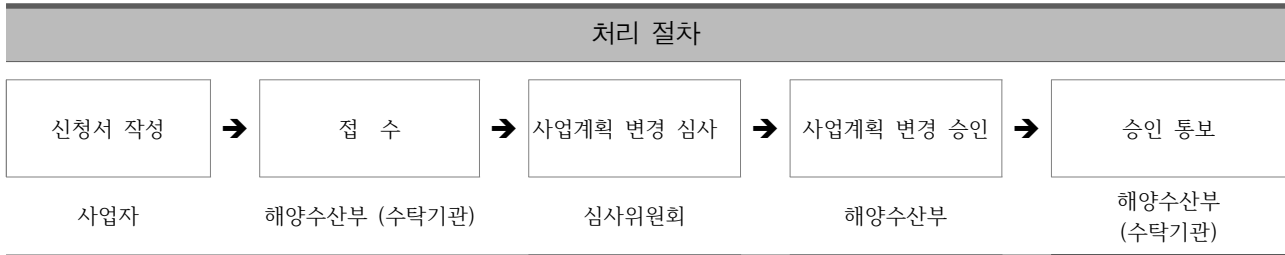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첨부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 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